개인정보보호!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

농림축산식품부

농림축산검역본부

대한민국 온기나눔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「동물도축세부규정」 고시 개정안 의견 조회 및 수요조사

1.동물보호법('22.4.26.) 및 같은 법 시행규칙('23.4.27.) 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「동물도축세부규정」 고시를 개정하고자 하니,

3. 본 개정(안)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 수요가 있는 경우, 아래의 서식에 따라 2024.2.23.(금)까지 우리 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, 위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개 정(안)	수 정(안)	사 유

붙임 1. 조문별 개정이유서 1부.
2. 신구조문 대비표 1부.
3. 「동물도축 세부규정」 개정(안) 전문 1부. 끝.

농림축산검역본부장

수신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(동물복지정책과장), 국립축산과학원장, 각 시도, 검역본부 가축방역 관련부서, 사단법인 한국축산물처리협회장, (사)한국육계협회장

주무관	김양헌	수의사무관	최일수	동물보호과 과장 직무대리	전결 2024. 2. 6. 김희진
협조자					

시행 동물보호과-500 (2024. 2. 6.) 접수

우 39660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177, 농림축산검역본부 (율곡동) 본관동 4층 동물보호과 / http://www.qia.go.kr

전화번호 054-912-0516 팩스번호 054-912-0528 / huni8952@korea.kr / 대국민 공개